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는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등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결정권자와 승인권자의 재량권을 반영하여 결정토록 하였으며 시도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표결정에 있어서 권형조정이 되도록 보완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지방세 과세적용상 불합리한 부분이나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였는 바 이는 주로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의 견해차이가 많이 발생한 부분을 대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이며 이를 보완함으로써 납세자의 민원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게 된 것이다.

II. 取得稅·登錄稅(土地分)時價標準額 適用比率 決定基準

1. 의 의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법인·개인)가 취득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미신고 또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신고시 시가표준액을 최저과세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적용비율 결정기준을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적용비율 결정의 기준 및 고시내용>

구 분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우리부의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50-100% 범위내	개별공시지가의 70-100% 범위내	개별공시지가의 80-100% 범위내
시 도 결정고시	○ 50% 결정 : 10개시도 ○ 60% 결정 : 2개시도 ○ 80% 결정 : 4개시도	○ 70% 결정 : 8개시도 ○ 80% 결정 : 8개시도	○ 80% 결정 : 9개시도 ○ 90% 결정 : 7개시도